

광주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0가단52717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주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훈

담당변호사 곽현준

변 론 종 결 2021. 11. 19.

판 결 선 고 2022. 1.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2. 29.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6. 3. 2. 접수 제351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 B이 2016. 2. 29.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6. 3. 2. 접수 제35120호로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원고(청구원인)

원고는 사돈관계인 피고 B에게 2014. 5. 15.부터 2015. 10. 7.까지 위 피고 명의계좌 및 피고가 지정한 D, E, F의 명의계좌로 30억 9,8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월 이자 10%)하였고 피고 B으로부터 2014. 7. 15.부터 2016. 1. 9.까지 28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아 변제받았는바 피고 B에게 대여금 912,158,8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피고 B은 무자력 상태에서 2016. 2. 29. 피고 C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매매예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채권 중 일부인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송금한 돈은 배당금을 받기 위하여 D의 부동산 거래에 투자한 것이다.

3. 판단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는 이를 수수한 원인이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가 그 수수원인을 다룰 때에는 그 금원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5. 15.부터 2015. 10. 7.까지 피고 B 및 소외 D, E, F의 각 명의계좌로 합계 3,098,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14. 7. 15.부터 2016. 1. 9.까지 피고 B 명의계좌에서 2,860,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3,098,000,000원 중 1,818,000,000원은 피고 B이 아닌 D, D의 처인 E 및 D의 직원인 F의 각 명의계좌로 송금된 것으로서 피고 B과 사이에 수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닌 점,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이 3,098,000,000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임에도 차용증을 비롯한 아무런 문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대여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원고는 피고 B이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연으로 계산하면 120%의 이율은 일반 경험칙상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송금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들고 있는 사유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채권(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일부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손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태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칠근원크리트구조 경사지붕 21층 공동주택(아파트)

1층 85.2512 m²
 2층 553.4466 m²
 3층 553.4466 m²
 4층 553.4466 m²
 5층 553.4466 m²
 6층 553.4466 m²
 7층 553.4466 m²
 8층 553.4466 m²
 9층 553.4466 m²
 10층 553.4466 m²
 11층 553.4466 m²
 12층 553.4466 m²
 13층 553.4466 m²
 14층 553.4466 m²
 15층 553.4466 m²
 16층 553.4466 m²
 17층 553.4466 m²
 18층 553.4466 m²
 19층 553.4466 m²
 20층 553.4466 m²
 21층 553.4466 m²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번호

면 적 115.943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 44014.9㎡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44014.9분의 70.5807. 끝.

